

#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0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04. 2. .  
발 의 자 : 이 창 수 의 원  
외 인

## □ 제안이유

- 2003. 12.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자료수집·연구비는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. (안 제2조의2 제2항)
- 나. 지방의회의원 여비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국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 (안 별표 2)

## 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시행령
-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- 예산수반사항(추가소요액) — 145,200천원 (추경반영)
  - 의정활동비 : 92,400천원  
- (900,000원x12월x22명)-(550,000원x12월x22명) = 92,400,000원
  - 보조활동비 : 52,800천원  
- (200,000원x12월x22명)-(0원) = 52,800,000원

## 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2 제1항중 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”을 “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”으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“의정활동비는 매월 550,000원으로 하고”를 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를 매월 900,000원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를 매월 200,000원으로 하여”로 한다.

별표 2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숙박비 (1야당)
의 장 부의장	가등급 166
	나등급 120
	다등급 92
	라등급 79
의 원	가등급 145
	나등급 95
	다등급 70
	라등급 62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 신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의 2 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 <u>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정활동비는 매월 550,000원으로 하고</u> 안산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</p>	<p>제2조의 2 (의정활동비 지급)</p> <p>① <u>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과 이를위한 보조활동 -----</u>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를 매월 900,000원으로 하고, 보조활동비를 매월 200,000원으로 하여 -----</u></p> <p>-----.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조제2항 관련)</p>	<p>[별표 2] 국외여비지급기준표(제조제2항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숙박비 (1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의 장 부의장</td> <td>가 등 급 151</td> </tr> <tr> <td>나 등 급 109</td> </tr> <tr> <td>다 등 급 84</td> </tr> <tr> <td>라 등 급 72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의 원</td> <td>가 등 급 132</td> </tr> <tr> <td>나 등 급 86</td> </tr> <tr> <td>다 등 급 64</td> </tr> <tr> <td>라 등 급 5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숙박비 (1야당)	의 장 부의장	가 등 급 151	나 등 급 109	다 등 급 84	라 등 급 72	의 원	가 등 급 132	나 등 급 86	다 등 급 64	라 등 급 56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숙박비 ( 1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4">의 장 부의장</td> <td>가 등 급 166</td> </tr> <tr> <td>나 등 급 120</td> </tr> <tr> <td>다 등 급 92</td> </tr> <tr> <td>라 등 급 79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의 원</td> <td>가 등 급 145</td> </tr> <tr> <td>나 등 급 95</td> </tr> <tr> <td>다 등 급 70</td> </tr> <tr> <td>라 등 급 6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숙박비 ( 1야당)	의 장 부의장	가 등 급 166	나 등 급 120	다 등 급 92	라 등 급 79	의 원	가 등 급 145	나 등 급 95	다 등 급 70	라 등 급 62
구 분	숙박비 (1야당)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가 등 급 151																								
	나 등 급 109																								
	다 등 급 84																								
	라 등 급 72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가 등 급 132																								
	나 등 급 86																								
	다 등 급 64																								
	라 등 급 56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숙박비 ( 1야당)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장 부의장	가 등 급 166																								
	나 등 급 120																								
	다 등 급 92																								
	라 등 급 79																								
의 원	가 등 급 145																								
	나 등 급 95																								
	다 등 급 70																								
	라 등 급 62																								

◎ 대통령령제18161호

**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**  
(일부개정 2003.12.18)

**1. 개정이유**

지방자치법의 개정(2003. 7. 18, 법률 제6927호)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,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제·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골자**

가. 시·도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 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함(영 별표 5).

나.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·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, 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영 별표 5).

다.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함(영 별표 7 및 별표 8).

**3. 시행일**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,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4. 개정내용**

대통령령 제 18161 호

###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

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중 “지방공무원수당규정”을 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3제1항제6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54조의10 전단중 “제48조의10”을 “제47조의10”으로 한다.

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구 분	의정활동비 지급범위	
	의정자료수집·연구비	보조활동비
시·도의회의원	월 1,200,000원 이내	월 300,000원 이내
시·군·자치구의회의원	월 900,000원 이내	월 200,000원 이내

별표 7중 숙박비(1야당)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숙박비(1일당)
46,000
46,000
46,000
25,000

별표 8중 일비란 및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비	숙박비
40	205
35	166
35	166
30	145

별표 10의 경기도의 행정(1)부지사란중 “화성군·광주군”을 “화성시·광주시”로 하고, 동표의 경기도의 행정(2)부지사란중 “양주군”을 “양주시”로, “포천군”을 “포천시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,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